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
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지원하는 범위를 현행 조류경보(藻類警報)가 발령한 경우에서 원수(原水) 중 지오스민(Geosmin)의 농도가 월평균 리터당 0.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및 원수 중 2-MIB(2-Methyl isoborneol)의 농도가 월평균 리터당 0.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00. 2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「수도법」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(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)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
가. 원수에 대하여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
나. 원수 중 지오스민(Geosmin)의 농도가 리터당 0.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
다. 원수 중 2-MIB(2-Methyl isoborneol)의 농도가 리터당 0.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기금의 용도) 법 제22조제 10호에서 “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	제28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조류정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(淨水) 비용의 지원(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「수도법」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)</u>	14. 「수도법」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(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자를 말한다)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. 원수에 대하여 조류정보가 발령된 경우 나. 원수 중 지오스민(Geosmin)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.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다. 원수 중 2-MIB(2-Methyl isoborneol)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.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

15. (생략)	15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	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152